계리실무표준서 공개 초안

(2006. 4)

한국보험계리사회

(매뉴얼분과위원회)

매뉴얼분과위원회

제정 배경

최근에 금융시장의 국제화, 종합화를 통하여 한국의 보험시장도 그 모습이 크게 달라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계리사들의 실무도 보험영역을 넘어서 보다 더 다양해지고 그 직무의 내용도 복잡해지고 있다. 더욱이 그간의 경제 · 금융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사상 초유의 저금리상태의 진행이라는 시장환경의 변화를 맞이하여, 보험상품의 구조는 크게 변하였다. 특히, 보험 상품에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기법을 활용한 option들이 적용되면서, 사실 전통적인 보험수리나 계리실무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들은 사실상 크게 변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 도래한 것이다. 게다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금융시장의 국제화는 우리나라의 계리사들에게도 보다 국제적인 표준(Global Standard)에 맞는 행동강령 및 실무기준을 요구하고 있으며, 2007년 국내에 시행이 예정되어 있는 국제회계기준(IAS :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 과 현재 제정 중에 있는 국제금융거래보고기준(IFRS :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 Standard)이 시행되게 되면, 계리사들의 직무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한국보험계리사회는 이러한 환경변화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전문가로서의 계리사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행하던 중, 보다 국제적 표준에 맞는 계리실무표준서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그에 따라 한국보험계리사회의 2005년도 사업계획에 이를 반영하고, 매월 분과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계리실무표준서 공개초안을 준비하였다.

제정방향

이 계리실무표준서의 초안은 한국보험계리사회의 매뉴얼분과위원회의 주관으로

9차례의 회의를 통하여 검토한 후 회원들의 의견을 구해기 위한 초안으로 채택되었다.

이 표준서의 제정에 있어서 최초의 쟁점은 이 표준서의 제정이 반드시 필요한지에 대한 것이었다. 현재의 계리실무는 대부분 보험업법 등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정해진 실무에 한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굳이 계리실무표준서가 없더라도 계리사가 정해진 실무를 수행하는 데에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국제적 표준과의 정합성에 비추어 볼 때, 한국사회에서 보험계리사들의 전문적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행동강령 이상의 계리실무표준서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이 표준서는 한국보험계리사회 회원들의 실무적 지침서로서 뿐만 아니라, 향후 많은 량의 의견들이 축적되고 수정 보완이 이루어 질 경우 법의 보완을 위한 자료 등으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이 표준서의 제정에 있어서의 두 번째 쟁점은 그 내용을 어떤 수준으로 작성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계리실무와 관련한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법, 감독규정, 감독규정 시행세칙 및 실무기준(Best Practice)의 순서로 그 권한이 이양되어져 있으며, 계리실무의 사실상의 실무근거가 되는 사업방법서나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도 대단히 구체적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이 지침에서 서술하는 것은 어떤 수준으로 구체화되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였다. 위원회는 현재 생명보험 및 손해보험 협회차원에서 제정 중인 보험계리모범규준과의 중복성을 피하기 위해 보다 “원칙위주의 실무표준서”를 작성하기로 결론지었다. 이 표준서의 서술수준과 기술형태는 캐나다의 계리실무표준에 크게 의지하였다.

또, 세 번째의 쟁점은 각국의 계리실무표준은 각국의 사정을 반영하여, 별첨의 자료에서 보듯이 그 서술방식이나 그 주제에 있어서도 상당한 편차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주제에 대해 어떤 서술방식을 택할 것이냐 하는 것이다. 거의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법규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정규적이고 일상적인

계리실무 이외의 분야에 대해 작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아직 실무표준이 제정되어 있지 않은 퇴직연금수리 및 예측급부채무(PBO: Projected Benefit Obligation)의 계산, 배당률 결정의 기준 등을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위원회의 대부분 위원들은 이것이 최초로 제정되는 계리실무표준으로서, 그 중요도를 감안한다면 책임준비금의 각 항목에 대해 기술하는 것이 훨씬 바람직하며, 그 기술방식이 다소 이론적이고 선언적일 경우 법규와의 충돌문제는 피해갈 수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러한 논의들 끝에 이 계리실무표준은 캐나다의 형식에 책임준비금의 각 항목을 주된 주제로 하였으며, 차후 추가적으로 정리되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 표준서 초안은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전 회원에게 공시되어 의견을 수렴한 후에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이 표준서 초안을 작성하기 위해 그 동안 수고해주신 서울계리법인의 김진철님, 써미트계리법인의 서정식님, PNC계리법인의 안용운님과 바쁜중에도 꾸준히 회의에 참석하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주신 분과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리며, 보다 좋은 내용의 계리실무표준서가 될 수 있도록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2006년 4월
임창원 위원장
이재민 자문위원
은원환 자문위원
김석홍 자문위원
김경운 위원
김대규 위원
김은상 위원

나강옥 위원

이백수 위원

한윤석 위원

별첨

1. 미국 계리사회의 「계리실무표준」 목차
2. 캐나다 계리사회의 「계리실무표준」 목차
3. 국제계리사회(IAA)의 「계리실무표준(IAS)」 목차
4. 일본 계리사회의 「계리실무표준」 목차

보험계리실무지침

“책임준비금”

일반지침 목차

1000 일반 ····· 7
1010 목적과 지위 ····· 7

1100 용어의 정의 ····· 7

1200 지침의 구성과 해석 ····· 9

1300 용인되는 실무와 응용 ····· 10
1310 용인되는 계리실무 ····· 10
1320 법규와의 충돌 ····· 11
1330 응용과 개산 ····· 11
1340 중요성 ····· 12

1400 데이터와 통제 ····· 13
1410 데이터 ····· 13
1420 충분성과 신뢰성 ····· 14
1430 통제 ····· 15
1440 결과의 검증 ····· 15

1500 가정 ····· 16
1510 가정의 역할 ····· 16
1520 필요한 가정 ····· 16
1530 가정의 선택 ····· 17
1540 가정의 적절성 ····· 17

1600 보고와 증빙서류 ····· 18
1610 의견표명의 방법 ····· 18
1620 기술과 주기 ····· 19
1630 보고서와 비밀유지의무 ····· 20
1640 타계리사의 업무 ····· 20
1650 증거자료의 보관 ····· 21

특별지침 목차

2000 책임준비금 ····· 22

2100 정의 ····· 22
2110 평가방법 ····· 22
2120 통제와 증거의 확보 ····· 24
2130 보고 ····· 25

2200 보험료적립금 ····· 26
2210 정의 ····· 26
2220 평가방법 ····· 27
2240 통제와 증거의 확보 ····· 29
2250 보고 ····· 30

230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 32
2310 정의 ····· 32
2320 평가방법 ····· 33
2330 통제와 근거의 확보 ····· 34
2340 보고 ····· 34

2400 지급준비금 ····· 35
2410 정의 ····· 36
2420 평가방법 ····· 36
2440 통제와 근거의 확보 ····· 38
2460 보고 ····· 40

2500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 41
2510 정의 ····· 41
2520 평가방법 ····· 42
2530 통제와 근거의 확보 ····· 43
2540 보고 ····· 44

일반지침

1000 일반

1010 목적과 지위

1011 이 지침은 한국보험계리사회의 회원이 계리업무를 수행할 때 전문가로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권고하거나 안내하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1012 회원은 법이나 규정에서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을 따라야 한다.

1013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 이 지침에서 제시하지 않는 것은 계리관련 이론서, 업무와 관련된 유관학문의 이론서 및 일반적으로 인정되었던 관련업무의 실무적 관행에 따르는 것으로 한다.

1100 용어의 정의

1110 이 지침에서 각 용어는 아래와 같은 의미를 가지며, 이는 통상의 의미와 다를 수 있다. 아래에서 정하지 않는 용어는 통상적인 혹은 관련법규나 실무관행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가진다.

1111 “계리업무”란 통상적으로 다음의 과정 중 하나 이상을 포괄하는 업무를 의미한다.

i. 업무에 필요한 관련 정보의 취득

i. 데이터의 수집

i. 가정 및 모델의 선택

i. 계산 및 결과의 합리성에 대한 검증

i. 의견의 제시

i. 보고

i. 근거서류의 작성 및 보존

1112 “계리사”란 한국보험계리사회의 정회원으로서, 자기이름으로 계리업무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를 말한다.

1113 “사용자”란 계리업무의 결과인 보고서를 사용하는 자로서, 사용자는 계리사를 고용하고 있는 자, 계리사에 대한 감독자 또는 단순히 계리정보를 필요로 하는 자이거나 다른 계리사일 수 있다.

1114 “보고서”란 계리사가 계리업무를 수행함에 따라서 그 과정과 결과 및 결과에 대한 의견을 기술한 보고서를 말한다.

1115 “기술한다”라는 것은 계리업무의 과정에 대한 묘사, 결과에 대한 정리 및 의견의 표명을 분명한 언표로 서술하는 것을 말한다.

1116 “주기한다”라는 것은 계리업무의 결과에 대한 정리에 덧붙여, 그 산출과정상의 한계나 데이터의 신뢰도 등에 대한 한계를 나타냄으로써 사용상의 제한이나 위험성을 경고하는 것을 말한다.

1117 “통지한다”라는 것은 법과의 충돌, 실무상의 새로운 방법, 새로운 문제의 제기 등이 필요한 경우, 한국보험계리사회에 그 내용을 전달하여 각 회원들에게 공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118 “계산기준일”이란 계리사가 수행하는 계리업무의 효력발생일로서, 해당 계

리업무의 근거가 되는 데이터의 정리기준일을 말한다. 예를 들어, 재무보고서를 위한 평가인 경우 계산기준일은 대차대조표일을 말한다. 이 계산기준일은 종종 “평가일“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어 사용된다.

1119 “최우추정”이란 보수적이거나 낙관적인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추정을 말한다.

1120 “우발적 사건”이란 그 사건의 발생여부, 발생경로 및 발생시기가 모두 우연한 것을 말한다.

1121 “손해조사비”란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보험금의 지급의무를 확정하기 위한 내적 외적 비용을 말한다.

1122 “계속기준의 회계목적에 의한 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계산기준일 이후에도 무한하게 그 사업을 지속해 나간다는 전제에서의 평가를 말한다.

1123 “청산기준의 회계목적에 의한 평가”란 평가대상기관이 계산기준일 현재 사업을 종료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평가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실제의 사업 종료여부와는 무관하다.

1124 “정기보고”란 정규적인 기간으로 반복하여 이루어지는 보고이다.

1200 지침의 구성과 해석

1210 이 지침은 일반지침과 특별지침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예외조항이 없는 경우 일반지침은 계리업무의 모든 분야에 적용된다.

1211 통상적으로 특별지침의 목적은 일반지침에서 용인되는 실무의 범위를 구체화하고 좁히기 위한 것이나, 특수한 경우에는 일반지침에서 용인되지 않는 것이 특별지침에서 용인될 수 있도록 정의하기 위한 것이다.

1212 이 지침은 오직 용인되는 계리실무에 대한 안내만을 제공한다.

1213 이 지침은 합리적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해석이 합리적이라는 것은 그것이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이 지침의 정신과 의도, 관련이론의 전개과정 및 상식을 기반으로 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1300 용인되는 계리실무와 응용

용인되는 계리실무

1310 계리업무의 사용자는 계리사가 그 실무방법에 대해 달리 기술하지 않는 때에는 이 실무지침을 따른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 관련법규와 이 지침에 따르는 것이 용인되는 계리실무이다.

1311 관련 법규와 이 지침은 용인되는 계리실무의 근거이다. 법규와 이 지침 이외의 해설, 예제 및 기타 유용한 실무의 사례는 다음에서 찾을 수 있다.

i. 생 · 손보협회의 계리실무 모범규준
i. 한국보험계리사회의 교육자료
i. 한국 및 국제 계리관련문헌
i. 유관학문의 이론서

1312 보험수리모델 선정의 적절성, 선정된 모델에 적용하는 가정간의 일관성, 모델에 적용하는 기본데이터의 합목적성은 계산과정의 정확성과 함께 평가결과의 적정성을 구성하는 요소이다. 계리사의 전문적 소견이란 이러한 전

과정에서의 합리성을 전제로 한다.

법규와의 충돌

1320 실무지침이 법규와 충돌할 때에는 그 법규를 따라야 하며, 계리사는 실무지침을 적용한 결과가 실질적이고 유용한 것이면 그 적용결과와 법규와의 충돌에 대해 한국보험계리사회에 통지해야 한다.

1321 만약 법규가 단순히 특정한 실무를 요구하거나 용인계리실무의 어떤 범위 내의 실무로 한정하는 취지인 경우에 그 법규는 용인계리실무와 충돌하는 것은 아니다.

1322 용인계리실무가 유용하다는 것은 사용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유용성의 기준이 특정한 사용자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그 유용성이 편파적이라거나 무의미하다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사용자마다의 유용성이 충돌할 때 계리실무는 발전하기 때문이다.

1323 법규와의 충돌의 내용과 그 효과를 통지하는 것은 그 업무가 이 실무지침으로부터 이탈해 있으며, 그것이 입법자 또는 감독자의 요구에 부응한 것이라는 사실을 공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법규가 이 지침의 전문성을 수용하도록 촉구하기 위한 것이다.

1324 법규와의 충돌의 내용과 그 효과에 대한 통지는 정량적 또는 정성적으로 할 수 있으며, 구두에 의한 통지도 가능하다.

응용과 개산

1330 이 지침의 적용이 부적절한 비정상적 또는 예측불가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 지침에 대한 변이나 응용은 용인된 실무로 간주된다.

1331 계리사는 이러한 비정상적 또는 예측불가한 상황에 대해 한국보험계리사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통지의 목적은 계리사회가 이러한 상황을 수용하여 지침의 개선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것이다. 계리사는 이 통지에 대한 공개를 제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332 이 지침으로부터의 변이나 응용이 실질적이고 유용하며 그것을 적용한 결과의 효과가 중요하지 않다면 그 변이나 응용은 용인된 실무로 간주될 수 있다.

1333 특정한 평가목적에서 계리업무의 시간적 한계 또는 비용절감을 위하여 개산(槪算)이 불가피한 경우, 그 개산의 결과에 대한 오차수준이 중요치 않거나 오히려 평가의 적정성을 높일 수 있다면 그 개산은 용인된 실무이다.

1334 업무의 시간과 비용뿐만 아니라 계산 및 데이터의 오류를 줄이기 위해 모델의 적정한 단순화에 의한 개산은 필요하지만, 그 단순화의 적정성 여부는 그 사례의 환경과 업무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1335 계산과정의 단순화를 위해 몇몇 가정들을 설정하는 것에 의한 개산은 그 평가의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뿐만 아니라 계산과정의 오류를 방지해준다. 예를 들면 보험사고는 연중 계속하여 발생하지만 연 중앙에 모두 발생한다고 가정한 개산은 적절하다.

중요성

1340 “중요성”은 업무의 목적을 고려하여 사용자의 관점에서 판단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의사결정 또는 사용자의 합리적인 기대에 특정한 영향을 미친다고 계리사가 판단하면 그것은 중요한 것이다. 이것이 계리사의 판단에 따른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사용자는 중요성의 기준을 상술하지 않기 때문이

며, 사용자가 별도로 중요성의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그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

1341 중요성에 대한 기준은 계리사가 예측하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여러 사용자가 있는 경우 그 사용자마다 그 기준이 서로 다를 수도 있으며, 평가의 목적에 따라 요구되는 수준이 다를 수도 있다. 따라서, 계리사는 사용자가 그 중요성의 기준이 적정한지를 판단할 수 있도록 의논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계리사는 가능한 한 업무의 목적을 상세하게 기술하여, 보다 엄격한 중요성의 기준이 적용되는 업무목적에 그 변이나 응용 혹은 개산의 결과가 사용될 때의 위험에 대해서 경고해야 한다.

1342 개산 또는 이 지침의 변이나 응용의 결과에 대해 그 적절성이 의심스러운 때에는, 계리사는 그 제한사항에 대하여 주기하여야 한다.

1400 데이터와 통제

데이터

1410 계리사는 업무를 위한 데이터가 충분하고 신뢰할 수 있을 때에만 단서조항 없이 평가에 대한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만약 데이터에 일부 결함이 있지만 그 평가결과의 유효성이 손상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리사는 그 데이터의 결함과 평가결과에 대한 사용상의 한계에 대해 주기한 후 의견을 기술할 수 있다. 그러나, 취득할 수 있는 데이터의 결함으로 인하여 유효한 결과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계리사는 그 내용을 기술하고 의견의 표명을 거절해야 한다

1411 데이터와 관련한 계리사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i. 필요 데이터의 선정

i. 데이터의 수집

i. 수집된 데이터의 심사

i. 수집데이터의 충분성 및 신뢰성에 대한 확인

1412 통상적으로 계리사가 계리업무를 통해 표명하는 의견은 그 계리업무에 적용된 데이터의 충분성에 대한 계리사의 확인과 그에 따른 책임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시간과 자원의 한계에 의하여 데이터의 충분성과 신뢰성에 대한 확신을 할 수 없어, 데이터에 대한 책임을 면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취지를 기술하여야 한다.

충분성과 신뢰성

1420 계리업무는 통상 데이터 의존적이고 데이터 집약적이다. 데이터 의존적이라는 것은 계리업무의 결과가 데이터의 충분성과 신뢰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데이터 집약적이란 것은 관계되는 데이터의 양이 풍부하고 세분화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1421 데이터가 충분하다는 것은 업무목적에 비추어 필요한 변수들에 대한 정보를 모두 포함한다는 것을 말한다.

1422 데이터가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그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말한다.

1423 이상적인 데이터를 합당한 비용과 시간 내에 수집할 수 없을 때, 계리사는 가능하다면 어떤 데이터로 대체하는 것이 충분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는지를 숙고하여야 한다.

1424 통상적으로 계리사는 데이터를 관할하거나 통제할 수 없으며, 타인이 제공

한 것을 사용하게 된다. 따라서 계리사의 주된 과제는 필요 데이타를 설정한 후, 그것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 데이터를 확인하는 것이다.

1425 계리사는 데이터의 수집절차와 통제 상태, 책임자의 자질과 준비 및 유지상태를 염두에 두고 데이터의 합목적성과 직전 평가시 데이터와의 일관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통제

1430 수작업이나 데이터 가공과 같이 분리된 단계를 거치는 복잡한 계산은 적절한 통제절차가 있는 경우 오류를 예방하거나, 예방이 불가능했던 경우에도 그 오류를 검증하기 쉽다. 또, 이러한 통제절차는 계리업무와 여타 관련업무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

1431 계리사는 계산과정의 오류를 예방하고 검증하는 통제절차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결과의 검증

1440 계리사는 계산결과의 합리성에 대해 검토하여야 한다.

1441 결과의 합리성은 과거의 유사한 경우와의 결과 비교, 벤치마크가 있는 경우에는 벤치마크와의 결과 비교, 개산결과와의 비교 또는 데이터 흐름에 대한 전문가적 상식 등에 의해 검증가능하다.

1500 가정

가정의 역할

1510 계리업무에 있어서 가정은 계산절차의 논리적 구조를 대변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수집데이터의 불충분성과 신뢰부족을 구제하기도 한다.

1511 계리사가 가정을 설정할 경우, 그 가정은 업무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합하면서 각 사안의 현실을 합리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충분히 포괄적이어야 한다.

필요한 가정

1520 계리적 계산을 위한 가정은 모델 가정, 데이터 가정 및 기타 가정으로 구성된다.

1521 모델 가정은 계산의 목표를 설정하는 변수 또는 논리의 구조를 말한다.

1522 데이터 가정은 수집한 데이터의 불충분성과 신뢰성을 구제하기 위한 가정을 말한다.

1523 기타 가정은 모델과 데이터 가정이 의존하는 법률적, 경제적, 인구 통계적 및 사회 환경적인 가정을 말한다.

1524 모델에서 채택되지 않은 변수는 해당변수에 대해 “0”의 가정을 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지니게 되므로, 모델의 지나친 단순화는 그 민감도를 훼손할 수 있다. 또, 평가목적에 따라서는 모델의 단순화가 오히려 계산상의 오류 가능성을 줄이고 모델상의 오류를 상쇄시켜 보다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리사가 모델을 선정할 때에는 업무의 목적과 계산결과

에 미칠 민감도를 고려하여야 한다.

1525 지나친 데이터 가정의 남발은 계산결과의 합리성을 훼손할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샘플링에 의존하거나 비교할만한 유사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더욱 유용한 결과를 도출할 수도 있다. 따라서, 계리사가 데이터 가정을 사용하는 경우, 그 파장에 대해 신중한 고려를 하여야 하며, 항상 대체가능한 데이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가정의 선택

1530 계리사가 선택하는 가정은 전체적으로 적절해야 한다. 다만, 민감도분석을 위한 대체가정(Alternative Assumption)의 경우는 예외일 수 있다.

1531 가정이 적절하다는 것은 각 가정의 개별적 내용이 적절할 뿐만 아니라 각 가정 사이의 연계에서도 일관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 가정들 사이에는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리수준과 해약율 또는 금리수준과 물가상승율은 일정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이러한 가정들은 상호 모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532 각 가정이 적절하다면 그 가정은 전체적으로 사실상 적절하다. 만약 어떤 특정한 가정의 부적절성이 다른 가정의 부적절성에 의해 상쇄된다면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적절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가정들은 임시방편적일 뿐으로, 그러한 상쇄가 잘못된 인식을 유도할 수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가정의 적절성

1540 적절한 모델 또는 데이터 가정이란 그 사안의 환경, 과거의 경험데이터, 과거 경험데이터로부터 추론되는 미래에 대한 예측, 역선택, 사안들 사이의

관계나 관련정책을 기초로 한 최우추정을 말한다.

1541 관련법규에 의해 규정되어진 가정의 적용은 합리적인 가정이다.

1600 보고서와 증빙서류

의견표명의 방법

1610 계리업무의 결과에 대한 표준적인 보고서의 서식이 있다면, 계리사는 그 서식과 서식이 내포하고 있는 각 항목의 정의에 따라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611 계리업무의 결과에 대한 표준적인 서식이 없는 경우, 계리사는 개별항목의 중요성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그 보고서의 내용이 달리 해석되지 않도록 계리적 또는 회계나 유관 실무관행상의 표준적인 용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612 계리업무에 대한 보고서는 통상 다음의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함하게 된다.

i. 해당 업무의 목적과 대상
i. 계산기준일
i. 실무의 절차 및 방법
i. 선택된 가정
i. 업무의 결과
i. 업무결과에 대한 계리사의 의견
i. 업무결과물의 한계나 사용상의 제한

1613 관련법규에 의해 계리사의 의견표명이 의무화되어 있는 경우, 계리사는 그

법규에서의 의견표명방법에 따라야 한다.

1614 정기적인 보고서인 경우, 전기의 보고와 다른 실무상의 절차와 방법 또는 가정의 선택이 있었던 경우, 이러한 변경은 우선적으로 언급되어야 한다.

1615 계리업무의 결과를 어느 정도 상세하게 보고할 것인가는 대체로 사용자의 요구에 달려있다. 특정 사용자(통상적으로 감독관)가 일반사용자보다 훨씬 상세한 보고를 요구한다면 그 사용자를 위해서는 분리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기술과 주기

1620 실무의 절차와 방법 및 선택된 가정들에 대한 기술과 주기들은 계리사가 자신이 수행한 계리업무에 대한 전문적인 확신을 선언하는 수단인 동시에, 예측되지 않은 사용자로부터의 문제제기나 항의 혹은 법률적인 책임으로부터 계리사를 보호해주는 장치가 된다.

1621 통상적으로 계리사가 기술과 주기들에서 언급하지 않은 것은 관련 법규 및 이 지침에 부합되게 이루어 진 것으로 간주된다.

1622 보고서에 기술과 주기가 너무 적으면 사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지 못할 수 있으며, 너무 많은 경우에는 중요치 않은 사안이 과장되어 요점파악이 곤란하게 될 수 있으므로 그 분량은 적정해야 한다.

1623 주기는 업무상 또는 데이터상의 한계로부터 계리사를 보호하는 훌륭한 장치이지만, 이러한 주기가 지나치게 빈번히 사용될 경우에는 전체적인 보고서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거나 계리사가 보고서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한다는 사용자의 오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계리사는 업

무의 결과에 대한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주기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보고서와 비밀유지의무

1630 계리사는 종종 자신의 보고서에 기술하거나 주기해야 될 내용이 자신의 사용자와 체결한 계약상의 비밀유지의무와 충돌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계리사의 의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의 준수가 법령이나 전문가행동규범에 따라야 하는 계리사의 의무를 대신하지는 못한다.

1631 계리사는 자신이 준수해야 하는 비밀유지의무가 계리사의 전문가로서의 의무와 상충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계속수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632 계리사가 보고일에 알았다면 보고서의 의견이 변할 수 있었던 사항에 대해 보고일 이후에 알게 되었다면, 계리사는 그 보고서를 철회할 것인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계리사가 보고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이러한 추가적인 정보를 수집해야할 의무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타 계리사의 업무

1640 계리사는 종종 타 계리사의 업무를 사용하거나 타 계리사의 업무를 검토해야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다. 이 경우, 계리사는 먼저 그 타 계리사가 직면해있었을 데이터, 정보, 자원 내지 시간적 제약에 대해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641 특수한 경우에 두 계리사는 서로 다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

요하지 않은 차이에 대한 논쟁을 피하는 것은 사용자를 위해 중요한 차이에 대해 설명하는 것만큼 계리사의 전문성에 대한 명성을 보호하는데 도움을 준다.

증거자료의 보관

1650 계리사는 적절한 증거의 작성과 보관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1651 적절한 증거란 업무의 과정과 용인된 계리실무와의 부합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모든 데이터, 작업서류, 회의록, 비망록, 교신자료, 보고서 및 업무계획서 등을 포함하는 의미이다.

1652 관련 법규들이 이러한 서류의 보존연한을 정하고 있을 수 있으므로, 계리사는 이러한 법규상의 요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653 타 계리사의 업무를 이전받음으로써 타 계리사의 소유 또는 통제 하에 있던 서류 등을 소유 또는 통제하게 된 경우, 계리사는 관련업무에 대한 사후적인 필요에 따른 그 전임계리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 그 서류 등의 활용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1654 후임계리사나 후임계리사를 대신하는 고용주가 전임계리사의 소유 통제 하에 있는 서류 등에의 접근을 요청하는 경우에 전임계리사는 그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특별지침

2000 책임준비금

정의

2100 책임준비금이란 보험자가 평가일 현재 유효하거나 유효했던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액에 대해 평가일에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이는 보험자에게 있어서 보험계약과 관련된 부채로서 계상되어야만 하는 금액이다.

2101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등에게 보험계약에 의거하여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금액이란 평가일 현재 이미 보험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여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지급되지 아니한 금액이나 확정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금액, 그 지급의무가 이미 발생되었다고 추정되는 금액 및 평가일 이후 현금흐름을 발생케 하는 계약에 있어서의 예측되어진 순현금흐름현가(Present Value of Projected Net Cash-Flow)나 내재된 투자계약에 의해 이미 할당되어진 자산 또는 자산에 준하여 할당되어진 부채금액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2102 장래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할 것이 확실하다고 하는 금액을 평가하는 데에는 그 것이 일정한 조건하에서 금액의 변동을 초래하는 option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 그 option의 가격을 포함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2110 책임준비금은 그 평가대상 부채의 성격 및 평가목적에 따라 보험수리 등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111 평가대상 부채의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 대상 부채의 보험계약적 혹은 투자계약적 성격에 의한 차이뿐만 아니라 계약의 상태나 해당부채에 대한 지급의무의 확정여부, 담보하는 위험의 성격 등의 차이를 말한다.

2112 평가의 목적이 다르다는 것은 계속기업회계 목적이나 청산회계 목적 혹은 감독회계 목적 외에도 여타 경영에 대한 자문을 위한 목적 등 계리사의 보고서에 대한 사용자의 필요가 다른 것을 의미한다. 평가목적의 차이는 평가방법이나 평가 상의 가정을 달리하게 한다.

2113 평가에 있어서의 합리성이란 평가대상 부채의 지급의무발생시점에 대한 화폐의 시간가치와 확률적 기대값에 대한 적정한 보험수리모델의 선정뿐만 아니라 적정한 가정의 조합에 의해 확보되어지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의 적정성은 평가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관련한 법규 등에서 그에 대한 평가방법이나 가정의 조합 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것에 따라야 한다.

2114 평가대상 부채에 내재하고 있는 option이란 일정수준의 배당금의 지급에 대한 약속이나 원리금보증 또는 최저사망보험금액의 보증 등을 포함하며, 특정한 사유에 의한 적용금리의 변경이나 가격변경에 대한 약속 등도 option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option의 가치평가에는 그 option의 성격에 따라 적절하게 변수가 선택되고 그 변수선택에 대한 근거들이 제시되어야 하며, option의 가치를 평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판단의 근거를 주기하여야 한다.

2115 오랜 과거의 보험계약에 의한 부채로서 과거의 산출방법서 등이 해당시기의 기술적 한계로 인하여 현재시점에서의 실무관행과 격차가 크며 그 합리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자 등에게 교부된 약관 등에 기초

하여 현재시점에서의 실무관행을 따를 수 있다. 이 경우 반드시 그 사유와 평가의 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통제와 증거의 확보

2120 계리사는 책임준비금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들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증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충분한 증거란, 예를 들면, 해당계약의 계약 내용 및 변경 내용, 보험료의 납입주기 · 납입횟수 · 납입일자 등 납입상황, 보험금지급사유의 발생여부 및 그 사유 등 대상부채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들 외에도 보험금등의 지급추세, 투자수익율의 추세나 사업비지출의 추세뿐만 아니라 사업계획의 변화내용 등과 같은 내부의 정보 외에도 경제성장률이나 물가상승률 등 외부정보를 포함한다.

2121 보험료의 입금으로부터 보험금의 지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은 해당실무단계에서 과오납입 내지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잘 통제되어야 하며, 각 실무단계에서의 자금의 입출금 상황은 그 합계액이 책임준비금 산출을 위한 기본 정보로서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 계리사에 의한 별도의 주기가 없는 경우, 계리사의 의견표명은 관련 데이터의 정확성으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2122 계리사는 각 실무단계에서의 자금의 입출금 상황이 상호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원인을 규명한 후 책임준비금을 평가하여야 한다. 불일치의 원인이 규명되지 않은 상태 혹은 규명된 후에도 수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책임준비금을 평가해야만 하는 경우에는 그 불일치의 내용과 불일치의 상황에서의 평가방법 등에 대해 주기하여야 하며, 그 평가방법이 최선임을 입증할 근거를 준비하여야 한다.

보고

2130 평가되어진 책임준비금은 대상 부채의 성격에 따라 적정한 계정과목으로 분류되어 집계되고 보고 되어야 한다. 회계기준상의 계정과목이 이러한 책임준비금의 평가목적상 적절하지 못하여 더욱 세분화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계정과목으로 합산하여 집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해당사항을 주기하여야 한다.

2131 평가목적에 관련되는 법규가 책임준비금으로 요구하는 대상부채를 그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세분화된 계정과목으로 표시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계리사는 그 합산한 금액이 동일하다고 하여도 법규가 요구하는 개별항목별로 세분화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합산하여 평가한 금액을 임의로 분할하거나 보험종목 혹은 계약의 일부에 대해 다른 취급을 하여서는 안 된다. 데이터의 이상, 시간의 부족 등으로 불가피하게 합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기하여야 한다.

2132 계리사는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보고서에 표명하기 전, 관련된 절차의 합리성과 객관성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 하며, 이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주기하여야 한다.

2200 보험료적립금

정의

2210 보험료적립금은 대차대조표일 현재 승인된 계약을 포함하여 유효한 계약으로 대차대조표일 이후 현금흐름을 발생케 하는 계약에 있어서 보험료산정방식에 의해 발생하거나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발생한다.

2211 보험료적립금이 보험료산정방식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보험료산정 시 장래의 수입과 지출에 대해 평준식 보험료를 받아들임으로써 계약기간 중의 어떤 시점에 장래의 지출현가와 수입현가 사이의 불일치가 발생하게 되는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의 보험료적립금은 그 계약에 의하여 장래에 그 지급의무가 발생될 것이 확실한 금액의 현가와 장래에 소요될 비용의 현가를 합한 금액에서 그 대가로 해당기간에 수입하게 될 것이 확실한 보험료수익의 현가를 차감한 예측되어진 순현금흐름의 현가액을 말한다.

2212 보험료적립금이 투자계약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은 보험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보험료의 일정부분에 대해 일정한 자산에 투자하기를 약정하고 그것에 대해 약정한 이자를 지급하거나 그 투자의 결과 발생한 수익을 분배하기로 한 경우를 말하며, 이 경우의 보험료적립금은 그간 투자되어진 금액에 의한 자산의 할당액 또는 그 자산에 상응하여 할당된 부채금액을 말하며, 계정의 분리유무를 불문한다.

2213 투자계약에 있어서 투자의 결과를 직접 할당하는 취지의 계약에서 보험료적립금은 원칙적으로 평가일 현재의 해당계약군에 의해 형성된 자산의 공정가격(Fair Value)을 각 계약의 자산에의 기여도에 의해 할당하는 것으로 한다. 이 경우, 해지 시 할당자산의 매각비용을 징구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

어도 이를 공제하여서는 안 된다. 또, 최저수익을 보증하는 취지의 약정이 있고 그 약정을 수행하기 위해 별도의 비용을 징구한 경우에는 그 최저보증을 위한 장래의 비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2214 투자계약에 있어서 투자자산에 상응하여 할당되어진 부채금액이란 투자계약에 의하여 납입된 투자원금에 매기의 약정한 이자를 더한 원리합계액을 말한다.

2215 보험료적립금은 회계기준상 그 구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대차대조표일 현재 승인된 계약을 포함한 유효한 계약과 과거 유효했던 계약을 구분하거나 그 적립금의 성격에 따라 다른 계정으로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
예) 보험료적립금, 보험료결손준비금, 최저보증준비금

평가방법

2220 보험료적립금은 평가대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계약을 적절하게 세분화하고 그 평가의 목적에 따라 합리적인 가정 하에 잔여보험기간에 대해 적정한 보험수리적 방법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2221 평가대상계약의 특성을 고려한다는 것은 각 계약이 가지고 있는 장래 현금흐름의 유형, 유지율, 사고 추세에서의 차이들을 반영할 뿐만 아니라, 계약에 내재되어 있는 option의 성격을 감안하는 것을 말한다.

2222 적절한 세분화란 계리사에 의한 평가가 충분히 신뢰성을 가질 수 있는 계약유형으로의 분할을 말하며, 계리사는 그 세분화기준과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보험료적립금을 관련법규의 요구에 의해 그 대상 부채의 성격에 따라 하나 이상의 세분화된 계정과목으로 구분하여 평가하는 경우, 그 세분화의 기준과 평가상의 가정은 관련법규에 의한 해당계정과목의 정

의에 따라야 한다.

2223 보험료적립금은 개별 계약단위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리사는 시간적, 기술적 제약에 의해 그것을 상품별 또는 상품유형별로 산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계리사는 모델이 되는 계약 내지 상품유형의 신뢰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224 보험료적립금의 평가에 있어 샘플링(Sampling)은 종종 좋은 평가수단이 된다. 계리사는 시간적, 물적 제약에 의해 개별 계약별 평가결과를 확인하지 못할 수 있다. 보험료적립금의 평가과정이 전산프로그램 등에 의해 일괄하여 진행될 때, 그 전체 과정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이 있다면 샘플링에 의한 확신은 자연스럽게 전체에 대한 확신으로 확장가능하다.

2225 합리적인 가정이란 평가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청산회계 목적인 경우 합리적인 가정이란 그 회사의 과거의 실적에 의한 경험적 가정 외에도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른 장래의 예측을 감안하여 거래당사자 간에 합의된 것을 의미하게 될 것이나, 계속기업회계의 목적이나 감독목적인 경우에 관련 법규에서 제시되는 가정은 합리적인 가정이다.

2226 청산회계 또는 기타 회계적 목적으로 보험료적립금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계리사에게 합리적인 가정에 대한 권한과 의무가 주어진 경우 계리사는 그 가정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227 합리적인 가정에서 각 가정 사이의 일관성은 대단히 중요하다. 장래의 투자수익률에 대한 가정은 투자계약의 보험료적립금을 구성하는 수익뿐만 아니라 최저보증비용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며 보험료산정방식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도 유지율에 영향을 미친다. 계리사는 이러한 가정 사이의 일관성 유

지에 대해 확신할 수 있어야 한다.

2228 잔여보험기간의 평가는 년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년 미만의 단수 등이 존재할 경우에는 년 단위의 평가에 의한 직선보간 등의 보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경과보험료 등 보험료적립금과 대체계정의 관계에 있는 부채의 산출방법들과 합목적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2229 투자계약에 대해서는 그 회계목적에 따라 장래의 예상수익이 아닌 과거의 실적을 기준(Retrospective)으로 할 수 있다.

2230 투자계약에 의한 자산할당 또는 자산에 상응하는 부채의 할당 시에는 과거의 입출금에 대한 기록과 투자결과에 대한 기록을 근거로 하여야 하며, 투자자산의 할당근거가 되는 투자원금의 계산은 산출방법서 등 관련계약의 인가되어진 방법에 의거하여야 한다.

통제와 증거의 확보

2240 계리사는 보험료적립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와 평가과정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241 충분한 증거란 평가대상계약의 성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본데이터 외에 가정이나 평가모델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이 경우의 합리성이란 모든 사람의 동의를 요하는 것이 아니며, 장래의 수지를 파악할 수 있는 충분한 요율변수를 확보하고 그 요율변수들이 적립금의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해설할 수 있는 수준을 의미한다.

2242 계리사에게 보험료적립금 산출을 위한 가정의 수립권한과 의무가 주어진

경우, 계리사는 자신이 선택한 가정을 설명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2241호 하단의 단서는 이 조에서도 유효하다.

2243 관련법규에서 평가 상의 가정에 관한 규정이나 평가모델에 대한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규에 따르는 것은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2244 평가목적에 따라 계리사에게 가정에 대한 사용자의 동의가 요구될 경우, 그 사용자의 동의를 얻은 가정은 합리성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2245 보험료적립금을 상품별 또는 상품유형별로 산출할 경우, 모델이 되는 계약 내지 상품유형의 신뢰도에 대한 증거란 계약유형의 통계적 분포에 대한 증거뿐만 아니라 계약별로 평가한 것에 비해 그 분포에 의한 보험료적립금의 평가결과가 가질 오차범위가 미미함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

2246 보험료적립금의 평가에 있어 샘플링에 의해 평가하는 경우, 계리사는 그 샘플의 추출방법, 추출된 샘플에 대한 평가결과, 관련 전산프로그램들이 합리적이고 일관성있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한다.

보고

2250 계리사는 평가의 결과에 대한 의견표명 시 채택된 평가방법과 가정들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2251 관련법규가 계약의 상태 또는 적립금의 성격에 따라 세분화하여 계상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각 세분화의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진 금액은 그 총액이 동일한 경우에도 임의로 합산되거나 분할하여 계상하여서는 안 되며, 데이터상의 오류 등으로 합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합산하여 평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주기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분할하여

기표할 수 없다.

2252 보고서에 기술될 평가방법과 가정들은 다른 사용자들의 해석을 방해할 정도로 너무 많거나, 사용자간에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을 만큼 너무 작지 않아야 한다.

2300 미경과보험료적립금

정의

2310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료기간이 계속기준 회계목적상의 단위기간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수익-비용 대응원칙이라는 회계공준을 관철시키기 위한 장치로서, 보험료적립금과 함께 계약의 해지 시 등에 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기본적인 부채의 하나를 구성한다.

2311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납입보험료 또는 미수보험료의 계상에 대한 대차계정이므로, 이러한 수익의 계상 또는 가수보험료 등 다른 부채의 감소를 동반하지 않는 거래에 대해서는 계상할 수 없다.

2312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투자계약이 내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에서 종종 보험료적립금과 대체계정의 관계를 가지므로 미경과보험료의 산정은 보험료적립금 산정방식과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예를 들면,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투자계약이 내재되어 있는 보험계약에서 미경과보험료를 계상하지 않고 보험료적립금으로 편입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는 경우 미경과보험료는 계상되지 않는다.

2313 보험계약에 의한 위험의 분산을 목적으로 한 재보험거래 등에 의해 보험료의 유출이 있은 경우에는 그 유출보험료에 관한 미경과보험료는 계상하지 않으며, 이 경우 계상하지 않은 미경과보험료는 그 위험을 이전받은 자가 계상하여야 한다.

2314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산출단위는 최소위험노출기간에 대한 보험료불가분의 원칙에 의해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계속기준 회계목적 하에서

는 전체 보험기간에 대한 경과기간의 일 내지 월 단위의 비율로 균등 분할 할 수 있다. 한편, 최소위험노출기간이 정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주기의 최소단위를 최소위험노출기간으로 간주할 수 있다.

2315 특정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회계목적의 차이 또는 보험계약상 계약자 해지권의 존재유무에 의해 보험료불가분의 원칙과 상호 충돌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보험계약상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되어야 하며, 지급준비금의 계산방식과 회계목적상의 일관성을 가져야 한다.

평가방법

2320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개별계약의 경과일수를 전제로 산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비용/편익의 균형을 고려하여 최소납입주기를 경과기간으로 간주하여 산출하거나 보험종목단위로 일괄하여 산출할 수 있다.

2321 보험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보험계약에 있어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계약체결 시 예측된 보험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할 수 있다.

2322 계약체결 시 사전에 위험노출수를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계약으로 처리하는 경우, 예상되는 보험료수입을 계상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미경과보험료를 계상하여야 한다.

2323 보험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보험기간을 확인할 수 없는 보험계약에 대한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은 년간 균등한 비율로 계약이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하여 산정하여야 하며, 보험료기간이 보험기간의 특정일수를 한정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전 보험기간에 대한 평가일까지 경과일수를 차감한 잔여일수의 비율로 산정하여야 한다.

2324 회계목적에 따라 보험료적립금과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분리하여 산출하는 것의 실질성과 유효성이 없는 경우 미경과보험료는 보험료적립금에 포함하여 산출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총액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회계목적에 따른 미경과보험료의 산출여부는 전 종목에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하며, 일부계약 또는 일부종목에 대해서만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통제와 근거의 확보

2330 계리사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331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의 산출에 있어서 충분한 정보란 보험계약의 절차 등 그 계약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 보험료기간으로부터의 경과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보험료납입기일에 대한 정보 및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보고

2340 계리사는 미경과보험료적립금에 대한 평가를 보고하는 경우, 그 산출근거, 평가방법 및 평가과정을 기술하여야 한다.

2341 회계목적에 따라 보험료적립금과 분리하여 미경과보험료적립금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합산금액이 동일하더라도 각 계정과목의 금액이 상이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2400 지급준비금

정의

2410 지급준비금은 평가일 현재 유효하거나 유효했던 보험계약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의무를 확정시키는 사고가 발생하여 평가일 현재 그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지만 지급되지 않은 금액이나 그 지급액으로 예상되어지는 금액과 그 사고가 이미 발생했을 것으로 간주됨으로써 평가일 현재 향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금액을 말한다. 이 금액에는 지급액을 확정하기 위해 필요한 손해조사비를 포함할 수 있다.

2411 '보험금지급의무를 확정시키는 사고'란 보험계약의 담보대상이 되는 위험에 의한 사고의 발생뿐만 아니라, 보험계약의 해지, 만기의 도래, 연금의 지급개시 등 현금 흐름을 유발하는 모든 계약상황의 실현을 의미한다.

2412 보험금지급의무를 확정시키는 사고의 발생으로 확정되거나 확정되어질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금액이란 평가일 현재의 정보로 손해사정사가 매 건별로 판단한 금액을 말한다.

2413 보험금지급의무를 확정시키는 사고가 이미 발생한 것으로 간주되어 향후 지급될 것으로 예상되어지는 금액이란 과거의 손해사정성향, 사고에 대한 통지의 성향 등을 토대로 계리사가 통계적 기법 내지 테이블방식으로 추산한 금액을 말한다.

2414 손해사정사가 평가하여 집계한 손해액을 토대로 계리사가 통계적 기법 등을 사용하여 그 총액을 수정하거나 보정한 경우에는 그 손해사정사의 평가액과의 차액은 2413에 의한 금액으로 간주된다.

2415 손해조사비를 계상하는 경우에는 사고조사, 손해평가, 소송 등에 필요한 비용으로서 개별 건에 할당되었거나 할당되지 아니하였거나를 불문한다.

2416 지급준비금은 재보험거래 등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의무를 분담하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에 의하여 수입될 보험금에 해당하는 금액은 계상하지 않으며, 계상하지 않은 지급준비금은 그 위험을 이전 받은 자가 계상하여야 한다.

2417 보험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그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 또는 보험목적의 잔존물에 대한 소유권 등을 취득한 경우 또는 장래에 이러한 권리를 취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또는 이전받을 잔존물의 가격을 지급준비금에서 차감할 수 있다.

평가방법

2420 지급준비금은 이미 발생한 사고에 대해 계약내용과 평가대상담보, 발생사고 및 보험목적의 특성을 고려하여 손해사정사가 각 사고 건별로 평가한 금액들을 집계한 금액에 이미 발생하였을 것으로 간주되는 사고에 대해 계리사가 통계적 기법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수정 내지 보정한 금액을 가감하여 평가되어야 한다.

2421 계리사가 통계적 기법 등에 의해 합리적으로 수정 내지 보정한 금액이란 각 담보별 특성, 사고의 분포, 손해의 진전 상태 내지 사고에 대한 통지의 성향을 토대로 과거의 손해사정성향이나 정책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담보별로 평가한 금액을 말하며, 계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사고심도별로 세분화하여 평가할 수 있다.

2422 평가목적에 따라 담보별로 평가된 금액은 상품별 계약별로 적정한 비율로 분할하여 계상할 수 있다.

2423 계리사는 선택한 통계적 방법, 적용한 데이터의 합리성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과거의 경험에 대해 지속적인 관찰을 하여야 하며, 선택한 통계적 방법이 합리적이지 않을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모델에 대해 연구하여야 한다.

2424 계리사가 적용한 통계적 방법 등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의 이유와 변경내용, 변경의 효과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2425 담보하는 위험의 발생주기가 장기간에 걸쳐있는 경우에도 장래의 위험을 평준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급준비금을 평준화하여 평가해서는 안 된다.

2426 손해조사비용은 그 금액이 특정한 사고와 관련한 비용인 경우에는 그 사고에 할당하여야 하며, 할당되지 않은 손해조사비는 담보별 사고빈도, 담보별 사고조사의 특성, 관련 인력의 현황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2427 평가의 목적에 따라 지급준비금의 예상지급시기에 따른 현가율을 적용하여 지급준비금을 할인할 수 있다.

2428 보험금의 지급에 대응하여 구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금액은 개별로 추산되어진 금액에 대해 개별적으로 구상예상액을 차감하거나, 담보별 금액에 과거의 구상실적을 기초로 산출된 구상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차감할 수 있다.

2429 일정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손해를 분담한다는 취지 또는 일정금액의 범위내의 손해만을 분담한다는 취지의 재보험계약을 맺은 경우, 계리사는 관련손해의 분포를 감안하여 산출된 금액을 그 계약에 의해 적립하지 아니할 금액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2430 지급준비금은 평가의 목적에 따라 종종 위험보험료 등에 대한 손해율(혹은 사차익율) 등의 형식으로 지급준비금으로서가 아니라 지급보험금에 합산하여 평가될 수 있다. 이 경우, 계리사는 그 손해율 등이 평가대상기간의 사고에 의해 발생한 지급보험금 뿐만이 아니라 지급준비금을 포함하여 산출되도록 하여야 한다.

통제와 근거의 확보

2440 손해사정사가 건별로 평가한 금액에 대해서 계리사는 원칙적으로 수정 내지 통제의 권한이나 그 금액의 적정성에 대한 책임은 없으나, 보험계약 부채로서의 지급준비금 총액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계리사의 책임이다.

2441 계리사는 지급준비금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증거와 평가과정의 합리성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증거의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2442 충분한 증거란 통계적 모델을 선택하기 위한 해당담보의 성격, 사고의 유형 및 사고통지의 성향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와 사고빈도 및 심도의 추세, 관련법규의 개정 및 손해사정성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손해사정정책의 변화 등의 정보뿐만 아니라 사고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수(Underwriting)정책 및 상품판매구성(Portfolio)의 변화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2443 평가과정의 합리성은 적용한 모델의 합리성과 적용데이터의 합목적성에 의해 완성된다.

2444 모델의 합리성은 과거 적용했던 모델에 대한 사후검증에 의해 확보되나, 관련법규의 개정이나 손해사정정책, 인수정책 및 상품판매구성의 변경 등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자 등의 역선택 성향을 감안하여 추론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계리사는 모델의 합리성을 추론하게 된 요율결정시의 예상손해에 대한 예측 또는 관련된 생존모델(Survival Model)등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445 적용데이터의 합목적성이란 모델에 적용하게 될 기본데이터의 세분상태의 적절성에 의해 확보된다. 예를 들어, 지급보험금에 의한 진전모델을 채택하는 경우 사고발생년도와 지급년도의 정확한 매칭(matching)은 합목적성의 관건이다. 또, 사고심도별로 세분화된 모델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사고심도별 진전추이를 확실하게 차별화하는 심도수준의 발굴과 그 기준에 의한 데이터의 세분화는 필수적이다.

2446 평가목적에 따라 관련법규에 그 평가모델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모델을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인 모델의 선택이다.

2447 보상한도 등을 설정하고 있는 계약에서 그 보상한도를 감안하여 평가하는 경우, 계리사는 그 한도를 초과하는 손해의 발생빈도 내지 적용한 손해분포함수에 대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448 구상액을 감안하는 경우, 계리사는 과거의 구상실적에 대한 근거를 확보하여야 하며, 관련법규의 개정 등에 의해 구상율의 변화가 예상되는 경우 그 개정내용 및 그에 의한 구상율 변화의 예측근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2449 계리사가 평가일 이전에 적용되었던 통계적 방법 등을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 사유와 변경 전 통계적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와 변경 후 통계적 방법에 의한 평가결과를 비교한 근거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2450 손해조사비용을 할당하는 경우 그 손해조사비용의 근거가 되는 비용명세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보고

2460 계리사는 평가결과에 대한 의견표명 시 적용한 통계적 방법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2461 평가의 목적에 따라 관련 법규가 손해사정사가 사고건별로 추산한 금액과 계리사에 의한 개별추산, 구상액 등을 구분하여 계상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 계리사는 이를 구분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2462 관련 데이터의 미비 또는 사업영위기간의 부족으로 통계적 방법에 의해 손해사정사가 사고건별로 추산한 금액을 수정 내지 보정하지 못한 경우, 계리사는 그 사유를 기술하고 손해사정사가 평가한 금액을 단순히 인용했음을 기술하여야 한다.

2500 계약자배당 관련 준비금

정의

2510 장기간에 걸친 보험계약에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상의 여러 가지 리스크 또는 자본금 상의 제약에 대한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러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대신 그 계약에 의한 이익의 일부를 배당의 형식으로 계약 중 혹은 계약의 완전한 종료 후에 계약의 상대방에게 돌려주겠다는 option을 추가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있다.

2511 그러나, 이러한 배당 option은 그 이익의 인식방법, 배분방법 및 배분시기가 모두 계약의 당사자 중 보험자에게 일방적으로 위임되어 있다는 점에서, 일정한 변수들을 설정하고 그 변수들의 객관적인 상황이 일정한 조건에 이르렀을 때 그 상황에 의해 일정한 금액이 자동적으로 산출되는 여타 option들과는 그 성격을 달리한다. 따라서, 계리사들은 이러한 배당 option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512 배당 option이 공정하고 공평하게 행사된다는 것은 다음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말한다.

i. 배당금의 분배가 개별 계약자의 공헌도에 따라 이루어 질 것

i. 배당기준이 국민사망률의 동향이나 이자율 등을 감안한 계약자들의 합리적 기대에 부응하는 것일 것

i. 그 소요액이 추산 가능하며, 책임준비금의 적정한 적립 등 회사의 장기적인 재무적 건전성이 유지될 뿐만 아니라 배당수준의 안정성도 유지될 수 있을 것

i. 배당금의 할당이나 지급방법 등이 경제적으로 유효할 것

2513 이러한 option에 의해 지급되어야 할 금액은 이미 할당되어 개별 계약자에 대한 부채로 평가되거나, 개별 계약자에게 할당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채, 잉여금 혹은 자본금의 형식으로 평가되어 있게 된다.

2514 계약자배당준비금은 이러한 option의 결과를 반영하여 계약 중에 각 계약에 이미 할당된 금액으로서 그 미지급기간에 대한 이자를 포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지급되어야 할 금액으로서 부채의 한 부분을 구성한다.

2515 대차대조표일 현재 개별 계약에 할당되지 않은 이익잉여금은 관련 법규 등에서 허용하는 바의 명칭에 따라서 적립될 수 있으나, 계리사들은 그 허용가능액과 사용시한 등에 있어서 종종 세무당국과 감독당국 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하여야 한다.

평가방법

2520 계약자배당준비금은 매년도의 배당기준에 의거하여 개별계약별로 정확하게 할당되어 적립되어야 한다.

2521 계리사는 매년도에 소요될 배당예상액을 산출하여 그 배당소요액의 적정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적정성이란 회사의 재무건전성의 유지여부 및 장래의 안정적인 배당가능여부를 의미한다. 특정연도에 특정한 자산의 과다한 평가손익 등 정상적이지 않은 손익이 포함되었는지의 여부를 관찰하는 것은 이러한 검토의 출발점이 된다.

2522 배당방법에 따라 그 실제적인 소요액을 달리하게 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존재하므로, 계리사는 소요액의 추산이 배당방법에 합목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523 개별계약의 공헌도에 따라 공평한 배당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은 종종 현재에서의 공헌도에 따른 공평성과 충돌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계약자배당은 당기의 이익뿐만 아니라 과거의 이익에 의한 유보금도 그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계리사들은 계약자들의 합리적인 기대수준이 무엇인지를 감안하고, 계속기업의 입장에서 장기적인 배당의 안정성이 지니게 될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2524 계약자배당의 대상이 되는 이익의 분할은 주주의 이익과 상충된다. 계리사들은 관련법규에서 그 분할비율을 정하고 있는 경우 그 분할비율을 따르면 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계약자들의 합리적인 기대수준을 따르는 것이 시장실패의 위험성을 회피하도록 하며 장기적으로 주주이익에 부합되는 것임을 설득해야 할 경우도 발생한다. 이 경우, 계리사들은 그것이 회사의 재무적 건전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임을 확신하거나, 그러한 수준의 배당정책을 유지할 수 있는 경영상의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통제와 근거의 확보

2530 계리사는 이익잉여금을 분할하고, 배당수준을 결정하거나 계약자배당금을 할당하는데 있어서 그 각각의 업무단계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확보해야 한다.

2531 이익잉여금의 분할단계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란 당기이익의 발생경로와 그 규모 및 과거로부터의 추이를 의미한다.

2532 배당수준의 결정단계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란 국민사망률의 동향, 금리수준, 기타 보험사고와 관련한 사회적 동향 등 계약자의 합리적인 기대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 외에, 그러한 배당수준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정량적인 예측뿐만 아니라 정성적인 정보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배당소요예상

액의 예측은 필수적이며, 과거에 적립되었던 미할당된 배당준비금 등의 과세연한 등은 고려할 수 있으나 그것이 중요한 변수여서는 안된다.

2533 배당금의 할당단계에서 필요한 충분한 정보란 각 계약집단별 이익의 구조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보고

2540 계리사는 잉여금의 배분, 배당방법 및 그 수준의 결정시 분명하고 평이한 표현으로 의사결정 상의 오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41 계리사가 장래 배당수준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제안할 경우, 그 조치들은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둔 구체적인 제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차기 추가 대상 >

2800 비상위험준비금

3000 이연사업비

4000 자산적정성 분석

5000 지급여력에 대한 확인

6000 요율의 산출
6100 요율산출의 기준
6200 생명보험 요율의 산출
6300 상해, 질병보험 요율의 산출
6400 의료비용보험 요율의 산출
6500 일반손해보험 요율의 산출
6600 자동차보험 요율의 산출
6700 장기손해보험 요율의 산출

<별첨1>

미국 계리사회 「계리실무표준 」

No.1

Nonguaranteed Charges or Benefits for Life Insurance Policies Annuity Contracts

생명보험 및 연금계약의 보증되지 않는 수수료 또는 급부의 취급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

Recommendations for Acturial Communications Related to Statements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s. 87 and 88

회계 보고서 제 87조 및 제 88조와 관련한 계리적 통지의 권고

Recommendations

1. Bacground 배경
2. Scope 범위
3. Existing Standards 현 기준
4. Disclosure 공시
5. Disclosure of Exceptions 예외사항 공시
6. Sample Disclosure 견본 공시

No.3

Practices Relating to Continuing Care Retirement Communities

퇴직조합의 지속적인 개호에 관련한 실무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k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4

Measuring Pension Obligations 연금 채무의 측정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5

Incurred Health and Disability Claims 건강보험과 상해보험의 발생급부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6

Measuring Retiree Group Benefit Obligations 단체 퇴직급부 채무의 측정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7

Analysis of Life, Health, or Property/Casualty Insurer Cash Flows

보험자(생명, 건강, 상해)의 현금흐름 분석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8

Regulatory Filings for Rates and Financial Projections for Health Plans

건강보험자의 요율 및 재무상태에 대한 법정 보고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k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9

Documentation and Disclosure in Property and Casualty Insurance Ratemaking, Loss Reserving, and Valuations

손해보험의 요율, 준비금 및 가치평가에 있어서의 보고서 및 공시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10

Method and Assumptions for Use in Life Insurance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Prepared in Accordance with GAAP

GAAP에 따라 작성되어 생명보험사의 재무제표에서 사용된 방법과 가정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11

The Treatment of Reinsurance Transaction in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any Financial Statements

생명 및 건강보험사의 재무제표에 있어서 재보험 전이의 취급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현 실행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12

Concerning Risk Classification 위험의 계층화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13

Trending Procedures In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making

손해보험사 요율 결정에 있어서의 추세 적용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14

When to do Cash Flow Testing For Life and Health Insurance Companies

생명/건강보험사의 현금 흐름 테스트 시기

No.15

Dividend Determination for Participating Indivisual Life Insurance Policies and Annuity Contracts

유배당 개인보험 및 연금보험의 배당금 결정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16

Acturial Practice Concerning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and Other Managed-Care Health Plans

HMO 및 기타 건강보험과 관련한 계리실무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17

Expert Testimony by Actuaries 계리사에 의한 전문적 증언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18

Long-Term Care Insurance 장기 간병 보험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19

Actuarial Appraisals 계리적 평가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0

Discounting of Property and Casualty Loss and Loss Adjustment Expense Reserves

손해보험 지급준비금과 손해조사비 준비금의 할인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1

Responding to or Assisting Auditors or Examiners in Connection with Financial Statements for All Practice Areas

모든 실무 영역에서의 재무보고서에 대한 감사 또는 검사인에 대한 대응 또는 보조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

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2

Statements of Opinion Based on Asset Adequacy Analysis by Actuaries for Life or Health Insurers

생명 또는 건강보험에서 보험계리사의 자산적정성 분석에 기초한 의견의 진술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3

Data Quality 데이터의 질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4

Compliance with the NAIC Life Insurance Illustrations Model Regulation

NAIC 생명보험 추산모델 규정의 준수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Bacground and Historical Issues 배경과 쟁점의 경과

section 4

Current Practices and Alternatives 현 실행안과 대안

section 5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6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5

Credibility Procedures Applicable to Accident and Health, Group Term Life, and Property/Casualty Coverages

건강보험, 단체정기 및 손해보험 담보에 있어서의 허용 가능한 신뢰도의 반영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6

Compliance with Statutory and Regulatory Requirements for the Actuarial Certification of Small Employer Health Benefit Plans

소규모 사업자 건강보험에 대한 계리적 확인에 있어서의 법규상의 요건 준수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7

Selection of Economic Assumptions for Measuring Pension Obligations

연금 채무 측정을 위한 경제적 가정의 선택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8

Compliance with Statutory Statements of Actuarial Opinion Requirements for Hospital, Medical, and Dental Service or Indemnity Corporations, and for Health Maintenance Organizations

병원, (치)의료 서비스업자, 배상 책임업자 및 HMO를 위한 계리 의견서에

있어서의 법정 보고서 요건의 준수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29

Expense Provision in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making

손해보험 요율산정에 있어서의 비용 담보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0

Treatment of Profit and Contingency Provisions and the Cost of Capital in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making

손해보험 요율산정에 있어서의 이익, 비상위험준비금 및 자본비용에 대한 취급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1

Documentation in Health Benefit Plan Ratemaking 건강보험 요율 결정에 대한 보고서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2

Social Insurance 사회보험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3

Actuarial Responsibilities with Respect to Closed Blocks in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Conversions

상호회사의 전환시 미전환계약(Closed Blocks)과 관련한 계리적 책임

section 1

Purpose, Scope,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4

Actuarial Practice Concerning Retirement Plan Benefits in Domestic Relations Actions

가족근무자의 퇴직연금 급부에 관한 계리실무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5

Selection of Demographic and Other Noneconomic Assumptions for Measuring Pension Obligations

연금 채무 산출을 위한 인구통계학적 및 기타 비경제적 가정의 선택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6

Statements of Actuarial Opinion Regarding Property/Casualty Loss and Loss Adjustment Expense Reserves

손해보험사의 지급준비금 및 손해사정비용 준비금에 대한 계리적 의견의 진술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7

Allocation of Policyholder Consideration in Mutual Life Insurance Company Demutualizations

상호회사의 탈상호화에 있어서의 계약자 지분의 정리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8

Using Models Outside the Actuary's Area of Expertise (Property and Casualty)

계리사의 전문영역(손해와 상해) 밖에서의 모델의 이용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39

Treatment of Catastrophe Losses in Property/Casualty Insurance Ratemaking

손해보험 요율 결정에 있어서의 대재해에 대한 취급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40

Compliance with the NAIC Valuation of Life Insurance Policies Model Regulation with Respect to Deficiency Reserve Mortality

사망율 결손준비금과 관련한 NAIC 모델평가법의 준수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

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No.41

Actuarial Communications 계리적 통지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해석 및 공시

No.42

Determining Health and Disability Liabilities Other Than Liabilities for Incurred Claims

기발생 지급준비금 이외의 건강, 장해 준비금의 결정

section 1

Purpose, Scope, Cross References, and Effective Date 목적, 범위, 관련 조문, 시행일

section 2

Definitions 정의

section 3

Analysis of Issues and Recommended Practices 쟁점분석 및 권고 실무

section 4

Communications and Disclosures 통지 및 공시

<별첨 2>

캐나다 계리사회 「계리실무표준」

1000--GENERAL 총칙

1000 - GENERAL 총칙

1100 INTRODUCTION 개요

1110 Definitions 정의

1120 Interpretation 해석

1130 Judgment 판단

1200 APPLICATION 응용

1210 Accepted actuarial practice 용인되는 계리 실무

1220 Educational notes 교재

1230 Scope 범위

1240 Associates 보조

1300 PERMITTED DEVIATIONS 이탈허용범위

1310 Conflict with law 법령과의 충돌

1320 Conflict with terms of engagement 계약 조건과 충돌

1330 Unusual and unforeseen situations 비정상 및 비예측 상태

1340 Materiality 중요성

1400 THE ENGAGEMENT 계약

1410 Accepting and continuing an engagement 계약의 승낙 및 계속

1420 Financial interest of the actuary 계리사의 재정적 이해

1430 Financial interest of the client or employer 고객 또는 사용자의 재정적 이해

1440 General knowledge 일반지식

1450 Knowledge of the circumstances of the case 구체적 사례의 환경에 대한 이해

1500 THE WORK 업무

1510 Approximation 추정

1520 Subsequent events 후속 사건

1530 Data 데이터
1540 Control 통제
1550 Reasonableness of result 결과의 합리성
1560 Documentation 증거서류

2000--INSURERS 보험자

2100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All Insurance 보험 계약 부채의 평가(전 종목)
2110 Scope 범위
2120 Extension of scope 범위의 확장
2130 Method 방법
2140 Reporting 보고

2200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P&C Insurance 손해보험 계약 부채의 평가
2210 Scope 범위
2220 Claim liabilities 지급준비금
2230 Premium liabilities 미경과보험료적립금
2240 Present values 현재가치
2250 Margin for adverse deviations 역선택에 대비한 마진

2300 Valuation of Policy Liabilities: Life and health (accident and sickness)insurance 상해 · 건강보험의 계약 부채의 평가
2310 Scope 범위
2320 Method 방법
2330 Scenario Assumptions: Interest Rates 시나리오 가정 : 이자율
2340 Other Assumptions: Economic 기타 가정 : 경제적
2350 Other Assumptions: non-economic 기타 가정 : 비경제적

2400 The Appointed Actuary 선임 계리사

2410 Definitions 정의

2420 Scope 범위

2430 Extension of scope 범위의 확장

2440 Accepting and continuing an engagement 계약의 승낙 및 계속

2450 Report on matters requiring rectification 필요수정사항에 대한 보고

2460 Report to the directors 경영자 보고서

2470 Communication with the auditor 감사와의 의사소통

2500 DYNAMIC CAPITAL ADEQUACY TESTING 동적자본 적정성 평가

2510 Scope 범위

2520 Investigation 관찰

2530 Method 방법

2540 Reporting 보고

2550 Opinion 의견

3000 - PENSION PLANS 퇴직연금

3100 SCOPE 범위

3200 METHODS 범위

3300 ASSUMPTIONS 가정

3400 FUNDING 자금조달

3500 ACCOUNTING FOR PENSION COSTS 연금비용에 대한 계산

3600 REPORTING: EXTERNAL USER REPORT 외부 사용자 리포트

3700 WIND-UP, HYPOTHETICAL WIND-UP, OR SOLVENCY VALUATION 청산, 청산가정 또는 지급여력 평가

3710 Scope 범위

3720 Wind-up Valuation 청산 평가

3730 Partial Wind-up Valuation 일부 청산 평가

3740 Hypothetical Wind-Up Valuation 청산가정하의 평가

3750 Solvency Valuation 지급능력 평가

4000--ACTUARIAL EVIDENCE 계리적 증거

4100 GENERAL CONSIDERATIONS 일반적 고려사항

4110 Scope 범위

4120 Capitalized Values 자본가치

4130 Method 방법

4140 Financial Interest of the Actuary 계리사의 재정적 이해관계

4150 Testimony 증언

4160 Reporting: External User Report 외부 사용자 보고서

4170 Reporting: Internal User Report 내부 사용자 보고서

4200 CAPITALIZED VALUE OF AMOUNTS FOR OTHER THAN PENSION PLAN BENEFITS FOR A MARRIAGE BREAKDOWN 이혼자의 연금 급부 이외의 다른 자본가치

4210 Method 방법

4220 Contingencies 우발사건

4230 Assumptions 가정

4240 Application of Law 법의 적용

4250 Reporting: External User Report 외부 사용자 보고서

4300 CAPITALIZED VALUE OF PENSION PLAN BENEFITS FOR A MARRIAGE BREAKDOWN 이혼자의 연금 급부의 자본가치

4310 Scope 범위

4320 Method 방법

4330 Assumptions 가정

4340 Reporting: External User Report 보고: 외부이용자 보고서

4400 COMPUTATIONS OF CRIMINAL RATE OF INTEREST 징벌적 이자율의 산출

4410 Scope 범위

4420 Data 데이터

4430 Method 방법

5000--PUBLIC PERSONAL INJURY COMPENSATION PLANS
산재보상보험

5100 SCOPE 범위
5200 EXTENSION OF SCOPE 범위의 확장
5300 VALUATION OF BENEFITS LIABILITIES 부채의 평가
5400 REPORTING: EXTERNAL USER REPORT 외부 사용자 보고서

6000--POST-EMPLOYMENT BENEFIT PLANS 퇴직 후 급부 계약

6100 SCOPE 범위
6200 DATA AND PLAN PROVISIONS 데이터 및 제도 규약
6300 METHODS AND ASSUMPTIONS 방법 및 가정
6400 FUNDING 자금 조달
6500 ACCOUNTING 회계처리
6600 REPORTING: EXTERNAL USER REPORT 외부 사용자 보고서

<별첨 3>

국제 계리사회(IAA)

「계리실무표준(IAS)」

IASP 2

Actuarial Practice When Providing Professional Services Concerning Financial Reporting of Insurance Contracts, Financial Instruments, and Service Contract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5]

IFRS하 보험 계약, 금융상품 및 용역계약 재무보고에 관한 전문 용역 제공시의 계리 실무

1. Scope..... 1
범위

2. Publication Date 1
공표일

3. Background 1
배경

4. Practice Guideline..... 2
실무 지침

4.1 Specific requirements..... 2
세부 요건

4.1.1 Disclosure regarding professional vices..... 2
전문용역임을 감안한 공시

4.1.2 Clarity of nature and scope of the professional services to be performed.... 3
수행되어야 할 전문용역의 특성과 범위의 명료함

4.1.3 Determining adequacy of the scope of work..... 3
업무범위의 적절성 결정

4.1.4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3
재무 보고시 요건

4.1.5 Knowledge of relevant circumstances 4
관련 환경에 대한 이해
4.1.6 Material inconsistencies..... 4
중요한 불일치
4.2 General requirements..... 5
전반적 요건
4.2.1 Requirements of practice 5
실무 요건
4.2.2 Qualifications..... 6
자격 요건
4.2.3 Communication of the actuary's role..... 6
계리사의 역할에 대한 의견교환
4.2.4 Preparation and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6
전문용역의 준비와 수행
4.2.5 Sufficient and reliable data 7
충분하고 신뢰가능한 자료
4.2.6 Model and assumptions..... 7
모델과 가정
4.2.7 Use of the work of others, including other actuaries 8
타 계리사를 포함한 기타 연구의 이용
4.2.8 Materiality..... 9
실질성
4.2.9 Controls..... 9
통제
4.3 Report of the actuary's work..... 10
계리업무보고
4.3.1 Requirement for a report..... 10
보고시 요건
4.3.2 Coverage of the report 10
보고 범위
4.3.3 Documentation..... 11
문서
4.3.4 Distribution to third parties..... 12

Appendix A . Basis for Conclusions (결론의 근거)..... 13
Introduction (소개)..... 13
Back (배경)..... 13
Title (제목)..... 14
Interaction with local rules of professional conduct and local actuarial standards..... 15
전문적 수행에 대한 지역 규정과 지역 계리 표준의 상호작용
Scope (1) (범위)..... 16
Specific requirements (4.1) (세부 요건)..... 18
Disclosure regarding professional services (4.1.1)..... 18
전문 용역에 대한 공시
Clarity of nature and scope of the professional services to be performed (4.1.2)..... 19
수행된 전문 용역의 특성과 범위의 명료함
Determining adequacy of the scope of work (4.1.3)..... 20
업무범위의 타당성 결정
Financial reporting requirements (4.1.4)..... 20
재무보고시 요건
Material inconsistencies (4.1.6) 21
중요한 불일치
General requirements (4.2) 21
일반적 요건
Requirements of practice and qualifications (4.2.1 and 4.2.2) 22
실무적 요건과 자격요건
Communication of the actuary's role (4.2.3)..... 22
계리사의 역할에 대한 커뮤니케이션
Preparation and performance of professional services (4.2.4)..... 22
전문 용역의 준비와 수행
Sufficient and reliable data (4.2.5)..... 23
충분하고 신뢰 가능한 자료
Model and assumptions (4.2.6) (모델과 가정)..... 23
Materiality (4.2.8) (실질성)..... 23
Controls (4.2.9) (통제)..... 23

Report of the actuary's work (4.3.)..... 24
계리업무 보고서

Appendix B . Relevant IFRSs..... 25
관련된 국제 재무보고표준
Appendix C . List of terms defined in the Glossary 26
용어 정의 목록

IASP 3
Classification of Contract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5]

IFRS에서의 계약의 유형

1. Scope 범위 1
2. Publication Date 공표일 1
3. Background 배경 1
4. Practice Guideline 실무 지침 2
   4.1 Classification of contracts - general process 2
   계약유형 - 일반절차
   4.2 Step 1 - Obtain relevant information 3
   관련 정보의 획득
   4.3 Step 2 - Definition of a contract for accounting purposes 3
   회계 목적에 따른 계약의 정의
      4.3.1 Separation of a contract for accounting purposes 4
      회계 목적에 따른 계약의 분류
      4.3.2 Combination of contracts for accounting purposes 4
      회계 목적에 따른 계약의 결합
   4.4 Step 3 - Classification of stand-alone service contracts 5
   독립용역계약의 유형
   4.5 Step 3 - Classification as an insurance contract 5
   보험 계약의 유형
      4.5.1 Insured event 6
      담보위험
      4.5.2 Adverse impact from insured event 7
      담보위험에 따른 역선택

4.5.3 Significant insurance risk..... 8
중요한 보험 리스크
4.5.4 Determination of commercial substance..... 10
상업적 본질에 대한 결정
4.5.5 Decision basis 10
의사결정근거
4.5.6 Changes in the level of insurance risk 11
보험 리스크 수준의 변화
4.6 Step 5 - Classification as an investment contract..... 12
투자계약의 유형
4.7 Step 6 -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s 13
임의배당조건
4.8 Step 7 - Service components..... 14
용역의 구성요소
4.9 Step 8 - Embedded derivatives 15
내재된 파생상품
4.10 Step 9 - Unbundling of a contract into components 15
계약 구성요소의 분해
4.10.1 Unbundling a deposit component 16
적립금 구성요소의 분해
4.10.2 Unbundling of an insurance component 17
보험 구성요소의 분해
4.10.3 Unbundling of service components 17
용역 구성요소의 분해
4.10.4 Separation of embedded derivatives 17
내재된 파생상품의 분리
4.10.5 Separation of guaranteed elements of contracts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s..... 18
임의배당조건을 가진 계약에서의 보증요소 분리
4.10.6 Contracts with optional features 18
옵션을 수반한 계약
Appendix A . Decision tree for contracts 19
계약에 대한 의사결정구조

Appendix B . Relevant IFRSs (관련 IFRSs)..... 20
Appendix C . List of terms defined in the IAA Glossary 21
용어 정의 목록

IASP 4
Measurement of Investment Contracts and Service Contract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5]

IFRS하 투자 계약 및 용역 계약의 측정

1. Scope 범위 1
2. Publication Date 공표일 1
3. Background 배경 1
4. Practice Guideline 실무지침 2
   4.1 Measurement 측정 2
      4.1.1 Classification and subdivision of contracts 2
         계약의 세분화와 유형화
      4.1.2 Initial measurement of financial instruments 3
         금융상품의 초기측정
      4.1.3 Treatment of transaction costs 3
         거래비용의 처리
      4.1.4 Host investment contract with embedded derivative 4
         내재파생상품을 가진 주 투자계약
      4.1.5 Subsequent measurement 5
         후속 측정

   4.2 Application of IFRSs for amortised cost model 6
      할부 비용 모델에 대한 IFRSs 적용
      4.2.1 Approach 6
         접근
      4.2.2 Determination of future cash flows 7
         장래 현금흐름의 결정

4.2.3 Administration costs 7
관리 비용
4.2.4 Renewals..... 7
갱신
4.2.5 Indeterminate elements 8
불확실 요소
4.2.6 Treatment of options and guarantee cash flows..... 8
옵션과 보증 현금흐름에 대한 처리
4.2.7 Selection of the probablility distribution 8
확률분포의 선택
4.2.8 Selection of the estimated cash flow Assumptions.....9
추정현금흐름 가정의 선택
4.2.9 Determination of amortised cost..... 9
할부비용 결정
4.3 Requirements on amortised cost under IFRSs..... 10
IFRSs하 할부비용 요건
4.3.1 Minimum floor..... 10
최저한도
4.3.2 Contract replacement 10
계약 대체
4.3.3 Taxes 11
세금
4.4 Application of accounting guidance for fair value model 11
공정가치모델에 대한 회계적 지침의 적용
4.4.1 Background..... 11
배경
4.4.2 Fair value approach..... 12
공정가치 접근
4.4.3 Commonly accepted approaches..... 13
일반적 접근
4.4.4 Selection of an appropriate model 13
적합 모델 선택
4.4.5 Selection of current estimate assumptions..... 13

현재추정 가정의 선택
4.4.6 Expenses to be recognised when using a discounted cash flow technique to measure fair value..... 13
공정가치 측정을 위한 할인현금흐름 기법 사용에 따른 인정 비용
4.4.7 Margins for risk and uncertainty..... 14
리스크 마진과 불확실성
4.4.7.1 Background 14
배경
4.4.7.2 Levels of margins for risk and uncertainty 16
리스크 마진과 불확실성의 수준
4.4.8 Calibrating the liability 16
부채의 측정
4.4.8.1 Market data for calibrating..... 16
측정을 위한 시장 자료
4.4.8.2 Calibration.....17
측정
4.4.9 Updating assumptions..... 18
가정의 갱신
4.5 Requirements on fair value under IFRSs 19
IFRSs하에서의 공정가치의 요건
4.5.1 Application of discount rate..... 19
할인율 적용
4.5.2 Minimum deposit floor 20
적립 최저한도
4.5.3 Taxes 20
세금
4.5.4 Updating assumptions..... 20
가정의 갱신
4.6 Application of IFRSs for service contracts..... 21
용역계약에 대한 IFRSs 적용
4.6.1 Approach..... 21
접근
4.6.2 Segmentation of fees by services provided..... 21

제공된 용역 수수료의 분류
4.6.3 Determination of future cash flows..... 22
미래현금흐름의 결정
4.6.4 Selection of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22
확률분포의 선택
4.6.5 Seleciton of the estimated cash flow assumptions..... 22
추정현금흐름가정의 선택
4.6.6 Determination of capitalised expense and amount of revenue 23
자본화비용과 수익규모의 결정
4.7 Requirements on service contracts under IFRSs 23
IFRSs하 용역계약에 대한 요건
4.8 Disclosure 24
공시
4.9 Criteria for model selection 24
모델선택의 조건
4.10 Allocation of expenses..... 24
비용 할당
4.10.1 Overview..... 24
개관
4.10.2 Allocation to an expense product subdivision and category..... 25
상품 소분류와 카테고리 비용할당
4.10.3 Apportionment process 26
보상액 할당 절차
4.10.4 Service agreements 26
용역 협약
4.10.5 Non-recurrent expenses 26
비정기 비용

Appendix A . Relevant IFRSs 28
관련 IFRSs
Appendix B . List of terms defined in the IAA Glossary 29
용어 정의 목록

IASP 5
Current Estimate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5]

IFRS 하의 현재 추정

1. Scope..... 1
범위
2. Publication Date..... 1
공표일
3. Background..... 1
배경
4. Practice Guideline..... 3
실무지침
4.1. Assumptions..... 3
가정
4.1.1 Approach..... 3
접근
4.1.2 Selection of a current estimate..... 4
현재 추정의 선택
4.1.3 Taking into account the model selected..... 4
선택된 모델의 회계처리
4.1.4 Specific to the book of contracts..... 4
계약기장의 특수성
4.1.5 Correlation between assumptions..... 5
가정간들의 상호작용
4.2 Types of assumptions..... 5
가정의 유형

4.2.1 Introduction..... 5
개요
4.2.2 Market assumptions..... 6
시장 가정
4.2.3 Contract- or portfolio-specific assumptions..... 7
계약 혹은 특정한 포트폴리오 가정
4.2.4 Reporting entity-specific assumptions..... 8
특정한 실체 가정의 보고
4.3 Specific discussions on non-market assumptions..... 8
비시장 가정에 관한 특별 논의
4.3.1 Setting non-market assumptions for financial instruments and service contracts..... 8
금융 상품과 용역 계약에 대한 비시장 가정의 설정
4.3.2 Discontinuance assumptions..... 9
비연속 가정
4.3.3 Expenses..... 10
비용
4.3.4 Use of prior experience..... 12
과거경험의 사용
4.3.5 Trends..... 13
추세
4.3.6 Updating non-market assumptions..... 13
비시장 가정의 갱신
4.3.7 Sources..... 14
출처
4.4 Disclosure..... 14
공시
Appendix A －. Relevant IFRSs..... 15
관련 국제재무보고표준
Appendix B －. List of terms defined in the IAA Glossary..... 16
용어 찾아보기

IASP 6
Liability Adequacy Testing, Testing for Recoverability of Deferred Transaction Costs, and Testing for Onerous Service Contract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5]

국제재무보고표준 하에서의 부채 적합성 테스트, 이연사업비의 회복성 테스트, 및 의무용역계약 테스트

1. Scope..... 1
범위
2. Publication Date.....1
공표일
3. Background..... 1
배경
4. Practice Guideline..... 2
실무지침
4.1 Liability adequacy testing and minimum liabilities for insurance contracts and for investment contracts with DPFs..... 2
보험계약 및 DPF를 수반한 투자계약에 대한 최소부채 적합성테스트
4.1.1 Insurance contracts..... 2
보험계약
4.1.2 Investment contracts that contain a DPF..... 3
DPF를 수반한 투자계약

4.1.3 Net carrying amount..... 4
순 현재 금액
4.1.4 Timing and the extent of testing..... 5
테스트의 시간 및 범위
4.1.5 The minimum requirements and the type of testing..... 5
최소 요건 및 테스트 유형
4.1.6 When the existing liability adequacy testing does not meet the minimum requirements 7
현재부채에 대한 적합성테스트가 최저준비금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4.1.7 Applying IAS 37..... 7
IAS 37의 적용
4.1.8 Additional considerations when applying IAS 37: future events and reimbursements 9
IAS 37의 적용에 있어서 추가 고려사항: 미래 거래 및 상환
4.1.9 Is liability adequacy testing before or after consideration of reinsurance?..... 10
부채 적합성 테스트에 있어서 재보험의 취급
4.1.10 Other reinsurance considerations..... 11
그 밖의 재보험 관련 고려사항
4.1.11 Aggregation..... 11
종합
4.1.12 Change in accounting policy..... 11
회계정책 변경
4.1.13 Accounting for a deficiency..... 12
결손에 대한 회계처리
4.1.14 IAS 39 minimum..... 13

4.2 Service contracts..... 13
용역 계약
4.2.1 Asset impairment..... 14
자산 평가 감소
4.2.2 Onerous contracts..... 16
의무 계약
4.2.3 Recognising an asset impairment or a provision for onerous contracts..... 17

부실자산 혹은 의무계약의 인식
4.3 Transition..... 17
이전
4.4 Disclosure..... 17
정보 공시
Appendix A －. Relevant IFRSs..... 19
관련 국제재무보고표준
Appendix B －. List of terms defined in the Glossary..... 20
용어 찾아보기

IASP 7

Recognition and Measurement of Contracts with Discretionary Participation Feature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5]

IFRS하에서의 임의배당계약의 인식과 측정

1. Scope..... 1
범위
2. Publication Date..... 1
공표일
3. Background..... 1
배경
4. Practice Guideline..... 2
실무지침
4.1. Assessment of whether a contract contains a DPF..... 2
계약이 DPF를 수반하는지의 여부 판단
4.1.1 Universal life insurance and participating contracts..... 3
유니버셜 생명보험과 관련 계약들
4.1.2 Contracts containing switching features..... 4
전환 특성을 포함한 계약들
4.2 Definition of guaranteed element..... 4
보증 요소의 정의
4.3 Constructive obligations..... 5
준 채무
4.4 Combined recognition of the guaranteed element and the DPF..... 6
보증 요소와 DPF의 복합 인식
4.5 Separate recognition of the guaranteed element from the DPF..... 7
보증 요소와 DPF의 분리 인식
4.5.1 Some circumstances where it may be appropriate to recognise the

guaranteed element separately..... 8
보증 요소를 분리하여 인식하기에 적합한 환경
4.6 Assessment of whether any part of the DPF is classified as equity..... 8
DPF의 일부가 주주지분으로 분류되는지의 여부 판단
4.6.1 Consequence of classifying parts of the DPF as equity..... 9
주주지분으로 분류된 DPF의 중요성
4.6.2 Applying IAS 39 to the guaranteed element for investment contracts with DPF..... 9
DPF를 수반한 투자계약에 대한 보증 요소에 IAS 39에 적용
4.6.3 Determining whether the liability is clearly higher than the minimum required for an investment contract with DPF..... 9
DPF를 수반한 투자 계약을 위해 최소한의 요구보다 명백히 높은 부채인지 아닌지 결정
4.6.4 Measurement of a DPF..... 11
DPF의 측정
4.7 Treatment of a negative measurement of the DPF..... 12
DPF의 부정적 측정의 처리
4.8 Revenue recognition..... 13
수익 인식
Appendix A －. Constructive Obligations..... 14
추정 부채
Appendix B －. Relevant IFRSs..... 16
IFRSs와 관련된 것들
Appendix C －. List of terms defined in the IAA Glossary..... 17
용어 찾아보기

IASP 8
Changes in Accounting Policie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5]

IFRS하 회계정책의 변화

1. Scope..... 1
범위
2. Publication Date..... 1
공표일
3. Background..... 1
배경
4. Practice Guideline..... 2
실무 지침
4.1 Introduction..... 2
개요
4.2 Principles for changing accounting policies..... 4
회계 정책 변경에 대한 원칙
4.3 Undiscounted insurance assets and insurance liabilities..... 6
비할인 보험자산과 보험부채
4.4 Current market interest rates..... 7
현행 시장 이자율
4.5 Non-uniform accounting policies..... 10
비표준 회계 정책
4.6 Prudence..... 11
신중성
4.7 Shadow accounting shadow..... 12
부실회계의 폐해
4.8 Future investment margins..... 15

미래 투자 수익
4.8.1 Background..... 15
배경
4.8.2 Exemption of performance-linked contracts..... 16
성과 연계 계약의 공제
4.8.3 Meaning of “introduction of consideration of future investments margins”..... 16
‘미래 투자수익의 고려대상’의 소개의 의미
4.8.4 Judgment about justification of an introduction of future investment margins..... 17
미래 투자수익 소개의 정당성에 대한 판단
4.9 Contracts with DPFs..... 21
DPFs를 수반한 계약
4.10 Designation of financial assets..... 21
재정적 자산의 지정
Appendix A －. Discussion of some specific issues..... 23
어떤 특정 이슈 토론
Appendix B －. Relevant IFRSs..... 37
IFRSs와 관련된 것
Appendix C －. List of terms defined in the Glossary..... 38
용어찾아보기

A Glossary for IASPs under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 [2005]

IFRS하 IASPs 용어

1. Scope, Rationale and Publication Date..... 3
범위, 이론적 설명 및 공표일
2. Glossary..... 3
용어
3. IFRSs referred to in IASPs..... 14

<별첨 4>

일본 계리사회 「계리실무표준 」

목 차

(총칙)
제1조 실무기준
제2조 보험계리인의 확인의무
제3조 삭제
제4조 의견서의 이사회 제출
제5조 의견서의 금융청장관 제출
제5조의2 의견서의 회계감사인 제출
제6조 감사 등과의 협력
제7조 실무기준의 개정

(법제121조 제1항 제1호의 확인)
제8조 책임준비금
제9조 책임준비금적립의 확인
제10조 표준책임준비금의 계산
제11조 1호수지분석의 실시
제12조 1호수지분석(1)
제13조 1호수지분석(2)
제13조의2 1호기본시나리오
제14조 책임준비금에 관한 의견서 기재사항
제15조 과거의 1호수지분석 결과와의 비교
제16조 기타

(법제121조 제1항 제2호의 확인)

제17조 공정 · 공평한 배당

제18조 공정 · 공평한 배당의 확인

제19조 회사의 배당가능 재원의 확인 차기배당 소요액

제20조 회사의 배당가능 재원의 확인 건전 소멸 기준

제21조 건전성 유지의 확인

제22조 상품구분단위의 배당가능 재원의확인

제23조 Asset Share의 확인

제24조 당년도말 Asset Share의 확인

제25조 장래의 Asset Share의 확인

제26조 배당에 관한 의견서 기재사항

(법제121조 제1항 제3호의 확인)

제27조 사업계속기준의 확인

제28조 사업계속기준의 계산

제29조 3호수지분석의 실시

제30조 3호기본시나리오

제32조 과거의 3호수지분석 결과와의 비교

(의견서)

제33조 의견서의 기재 총론

제34조 법제121조 제1항 제1호에 관한 의견서의 기재

제35조 법제121조 제1항 제2호에 관한 의견서의 기재

제36조 법제121조 제1항 제3호에 관한 의견서의 기재

(부칙)

부칙 제1조 적용시기

부칙 제2조 경과조치

부칙 제3조 시가회계도입에 관계되는 경과조치